



# 3

## 체류 및 국적취득

- 046 **외국인 입국·체류**
  - 여권의 유효기간 및
  - 사증 체류기간 확인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외 활동
  - 재입국 허가
  - 외국인의 신고의무
  
- 056 **영주(F-5)자격 취득**
  - 대상
  -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 영주자격의 상실
  
- 058 **국적 취득**
  - 대상
  - 구비서류
  
- 064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 065 **이민자 사회통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1 외국인 입국·체류

##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 입국심사인 안에 찍힌 일자리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 외국인등록증 읽기



앞면



뒷면

####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 기존 외국인등록증에는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이라고 표기
- 외국인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영문자로 표기하며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 F-6)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 ❖ 뒷면

#####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 영주자격(F-5)인 경우 '신분존속기간'이라고 표기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 ◎ 체류지

- 신고일 :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일자를, 체류지변경 시에는 체류지변경일자를 표기
- 체류지 : 체류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
-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는 서울(출)·부산(출)·세종(출) 등으로 표기하고 시·군·구는 김포시, 가평군, 종로구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기



###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과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 2.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 (2)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 수수료 30,000원(현금)

### (3) 결혼이민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위 두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 ※ 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 (18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14.11.10부터는 근무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등록증 재발급은 등록 거주지 관할소에서만 신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 ✓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정도 지난 후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사무소 방문 없이 집에서 받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택배 요금을 선불로 내고 택배를 신청하면 등록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유의사항 : 휴대 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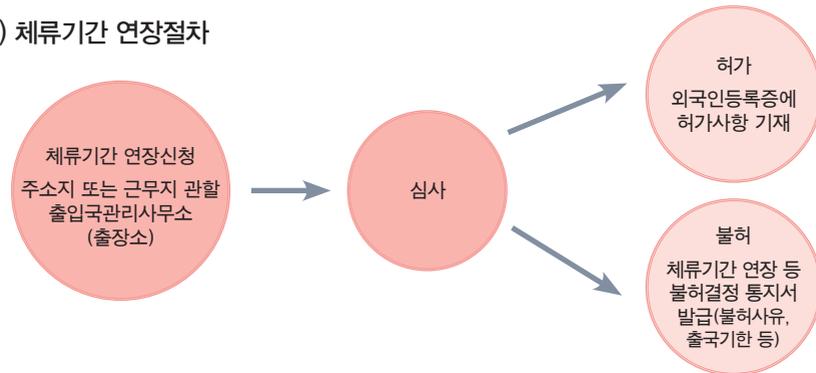
**구비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시기	제출서류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없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사망했을 때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 사실증명서류,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체류기간 연장****(1) 대상 및 시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체류기간 연장절차****(3)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추가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F-6(결혼이민)의 경우 30,000원)

**결혼이민자가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 혼인파탄에 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4. 체류자격 변경****(1)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00,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3) 결정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허가된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며,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 5. 체류자격 외 활동

### (1) 대상 및 시기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자격(D-2) 사증을 가진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취업활동허가(S-3)를 받고자 할 경우(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 (3) 결정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스티커를 부착한다. 불허되면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발부한다.

## 6. 재입국 허가

### (1)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 (2) 기간

-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 (3)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

-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 입국금지자 및 사증발급규제자가 그의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 제한됨 → 관할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 신청

### (4)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 (5) 재입국 허가 기간의 연장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국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국이 규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 7.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1) 신고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해당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H-2 해당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 (2) 구비서류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알아두세요!**

**수입 농·축산물 검역**

휴대품,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검역을 실시하여 수입 농·축산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 **휴대품**

불법 휴대반입자 과태료 부과

구분	주요 수입국	주요 수입금지 품목
축산물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자흐스탄	소시지, 돈육가공품, 우육가공품, 계육가공품, 햄
식물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망고, 사과, 감귤, 배, 오렌지

◎ **특송 화물**

구분	주요 수입국	주요 수입금지 품목
축산물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개사료, 혈액제품, 산양혈청, 우유, 고양이 사료, 녹용 등
식물	미국, 독일, 호주, 중국, 캐나다	마늘분말, 퀴노아, 아시아베리분말, 귀리, 생강분말 등

◎ **국제우편물**

구분	주요 수입국	주요 수입금지 품목
축산물	일본, 태국, 중국, 미국, 미얀마, 캄보디아	우지가공품, 돈육·우육가공품, 소시지 등
식물	태국, 중국, 일본, 미국, 캄보디아	망보, 파파야, 라임, 타마린드, 열경채 종자류 등

※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영주(F-5)자격 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1. 대상

- 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②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 ③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④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고액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 ⑤ 재외동포 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자
- ⑥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
- ⑦ 대한민국 출생 제한학교
- ⑧ 첨단산업분야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⑨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⑩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⑪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 ⑫ 특별공로자
- ⑬ 연금수혜자
- ⑭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⑮ 점수제 거주(F-2)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⑯ 부동산투자자 또는 공익사업투자자로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 ⑰ 기술창업(D-8-4)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중인 자
- ⑱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을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일정요건을 갖춘자
- ⑲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출생 자녀
- ⑳ 공익사업 투자자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
- ㉑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 ✓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2.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단,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는 제외(제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재제출 대상)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단,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만 15세 미만 인자와 정규교육 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외)에 해당됨(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생계유지능력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중 하나)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200,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현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구비서류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 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 3. 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 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과거 밀입국 또는 타인명의여권 등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3 국적 취득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1. 대상

- ① 한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⑥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결혼이민자

- 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④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2. 구비서류

- ◎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 여권,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0,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서약서
- ◎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 ◎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 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

## (1) 국적 취득 절차

### ①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 속초출장소 포함)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 ② 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③ 귀화허가 결과 통지

-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귀화허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공지된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허가통지서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서 기본증명서 3통을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 시 소지·제출한다.

④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관리사무소)

- ①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 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대사관 등에 귀화허가통지서 제출 시 복사본 제출(원본은 본인 보관)
- ③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⑤ 주민등록신고

-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cm×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관리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4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 1.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미국대사관	+1-202-939-5600
주중국대사관	+86-10-8531-0700
주일본대사관	+81-3-3452-7611/9
주태국대사관	+66-2-247-7537~39
주베트남대사관	+84-4-3831-5110~6
주몽골대사관	+976-7007-1020
주필리핀대사관	+63-2-856-9210
주캄보디아대사관	+855-23-211-900/3
주러시아대사관	+7-495-783-2727
주라오스대사관	+856-21-352-031~3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998-71-252-3151~3
주네팔대사관	+977-1-4270172
주우크라이나대사관	+380-44-246-3757
주미얀마대사관	+95-1-527142~4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996-312-579-771

## 5 이민자 사회통합

###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기초 생활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상호문화이해(부부교육), 체류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로 포함한 12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17개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 ◎ 내용

-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멘토링
-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상대국가 문화 이해
- 기초생활 법질서 분야
-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및 제도 소개
- 가정폭력 피해구제 안내 등
- 체류허가, 가족초청, 국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출입국관련 업무 안내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최초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기간 2년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초 참여 과정 2시간 이수 인정

###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 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 ◎ 교육과정 : ① 한국어 기초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③ 한국사회이해 과정



◎ 내용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감) 후 참여						

◎ 운영주기 :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 운영기관 : 327개 운영기관(2017년 4월 기준)

◎ 이수자 혜택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 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6점) 부여
- 일반 영주자격(F-5)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인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중간평가 합격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LCT) 합격증' 발급
- 종합평가 합격자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발급
  - \* 5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국적·체류상담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참여자가 희망 시 교육과정 중 다양한 상담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전국 운영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국어와 19개 외국어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신청, 결과확인 등 서비스 이용

## 친근감을 표시하는 한국문화 ③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친근감의 표시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한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존중받아야 할 부위로 여겨 만지는 것을 금기시 한다. 태국인들이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만큼, 상대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https://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